소송 등의 판결·결정(2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반소 : 중재판정취소
2. 원고・신청인	반소원고 :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
3. 판결・결정내용	1.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.
4. 판결・결정사유	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5. 관할법원	서울고등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8년 5월 15일
7. 확인일자	2018년 5월 16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-